

미리 보는 2006년 세제 개편(안)

- 법인세법 · 소득세법 분야

(재정경제부, 2006. 8.)

목 차

<법인세법 분야>

1.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2.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조정
4.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5.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법인세법 · 소득세법 공통 분야>

6.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7.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8.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 인하
- 9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10.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지원

<소득세법 분야>

11. 소득세제 간소화
12.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13.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14.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1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17.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18.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19.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20.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21.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22.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
2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24.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25.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26.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27.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28.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근거 신설
29.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
30.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법인세법 분야>

1.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령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조경수식재업의 농업 ○ 연금 및 공제업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정) ○ 유치원·학교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교육서비스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추가 (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정, 그 밖의 자산 운용수입은 과세)

■ 개정이유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나 비용인 보증손실은 15~20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됨에 따라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보증사업 수행의 차질을 방지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법법 §18)

현 행	개 정 안
<p>□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p> <p>○ 수입배당금의 90%를 익금불산입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한함</p>	<p>○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p>

■ 개정이유

지분율이 10% 미만인 기관투자자에 대해 90%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익금불산입율을 높게 적용하는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 해소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조정 (법법 §18의 2)

현 행	개 정 안																																											
<p>□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p> <p>○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p> <p>※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모회사</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주회사</td> </tr>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지분비율</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익금불산입율</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장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100%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4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미만(일반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상장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0%~100%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8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td> </tr> </table>		모회사	지주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100%	100%		40%~100%미만	90%		30%~40%이하	60%		30%미만(일반법인)	30%		비상장법인	100%	100%		80%~100%미만	90%		50%~80%이하	60%		<p>○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지분율</th> <th style="width: 15%;">2007</th> <th style="width: 15%;">2008</th> <th style="width: 15%;">2009</th> </tr> </thead> <tbody> <tr> <td>40%~100% 미만 (비상장 : 80%~100% 미만)</td> <td>90%</td> <td>90%</td> <td>90% → 100%</td> </tr> <tr> <td>30~40% 이하 (비상장 : 50~80% 이하)</td> <td>60% → 70%</td> <td>70% → 80%</td> <td>80%</td> </tr> </tbody> </table>	지분율	2007	2008	2009	40%~100% 미만 (비상장 : 80%~100% 미만)	90%	90%	90% → 100%	30~40% 이하 (비상장 : 50~80% 이하)	60% → 70%	70% → 80%	80%
	모회사	지주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100%	100%																																										
	40%~100%미만	90%																																										
	30%~40%이하	60%																																										
	30%미만(일반법인)	30%																																										
비상장법인	100%	100%																																										
	80%~100%미만	90%																																										
	50%~80%이하	60%																																										
지분율	2007	2008	2009																																									
40%~100% 미만 (비상장 : 80%~100% 미만)	90%	90%	90% → 100%																																									
30~40% 이하 (비상장 : 50~80% 이하)	60% → 70%	70% → 80%	80%																																									

	50%미만(일반법인)	30%	
--	-------------	-----	--

■ 개정이유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 정비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4.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법칙 §18 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범위 내 손비 인정)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법령 §4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접대비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	<input type="checkbox"/> 특정고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

■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경우 판매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 소득세법 공통 분야>

6.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법령 §41·§158, 소법 §81 ⑧, 소령 §83 ⑥·§208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격 증빙 수취의무 ○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시 적격 증빙* 을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5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 5만원 초과 거래 - 증빙 미수취의 가산세(2%) 부과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접대비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건당 5만원 초과접대비는 적격증빙 미 수취시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input type="checkbox"/> 적격 증빙 수취의무 강화 - 대상 : 1만원 초과로 확대 - 가산세 부과대상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 (추계과세자 제외) - 건당 1만원으로 인하 * 적격증빙 기준금액과 일치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법법 §76, 소법 §81 ⑦)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가산세 부과사유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제출시기 : 익년 1월말까지 <p>○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시 별도의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 	<p>○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부과사유·가산세율·대상을 적용
--	---

■ 개정이유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부담이 없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강화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교부받은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 인하 (법법 §98 ① 3, 소법 §156 ①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25%	○ 14%로 인하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법법 §117의 2, 소법 §162의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 권유 -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 *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교부사업자 (소매, 음식·숙박,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등) ② 의료보건용역 제공사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③ 학원업 ○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세무조사) 가능 -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 신용카드 :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등을 감안 현행과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 권유 ○ 현금영수증 : 가맹점 가입 의무화 - 대상 : (현행 유지)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의무화 ○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① (현행 유지) ② 감면배제 강화 -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배제 ③ 가산세 신설: 수입금액의 0.5% ④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적용시기

200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기존사업자는 2007.6.30.까지 가입의무화)

10.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지원

(법법 §117의 2, 소법 §162의 3, 국기법 §84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

<p>규정 없음</p> <p>○ 다만,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사용 등 신용카드 단속에 필요한 사항 명령 가능</p> <p>- 명령 위반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벌금부과가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수증 발급의무화*</p> <p>* 가맹사업자에 한정</p> <p>○ 현금영수증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p> <p>○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거부시 경정(세무조사) 가능</p> <p>○ 발급 거부시 가산세 부과</p> <p>- 가산세율 : 발급거부금액의 5%</p> <p><상습거부자에 대한 추가제재></p> <p>○ 가입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p> <p>-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p> <p>- 감면배제</p> <p>* 상습거부자(예:연간 5회 이상)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시 규정</p> <p><input type="checkbox"/> 신고포상금 지급</p> <p>○ 신용카드 사용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포상금(건당 5만원) 지급</p>
---	--

■ 적용시기

200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분야>

11. 소득세제 간소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득종류 (11개)	<input type="checkbox"/> 소득종류를 통폐합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 일시재산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2개) ○ 산림소득(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소득공제 : 연 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기타소득으로 통합 ○ (현행 유지) ○ 사업소득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00만원 비과세
--	--

■ 개정이유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통·폐합하여 소득구분을 간소화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소법 §16·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신탁이익은 신탁에 편입된 자산 비중 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 : 신탁자산 중 이자소득이 발생 하는 자산이 50% 이상 ○ 배당소득 : 신탁자산 중 배당소득이 발생 하는 자산이 50% 초과 	<input type="checkbox"/>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에 편입된 자산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 개정이유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세상 차이 없이 세제의 복잡성만
초래하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13.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소령 §3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 비과세 한도 : 급여총액의 5% - 비과세 시한 : 2006.12.31	<input type="checkbox"/> 비과세한도 일원화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 일몰 폐지

■ 개정이유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와의 형평을 감안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법 §47 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역모기지 :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가입요건 ① 부부 모두 65세 이상 ② 1세대 1주택 ③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자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및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득공제방법 - 이자비용을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공제 ○ 한도 : 연간 200만원

■ 개정이유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1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소법 §51·51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대상 : 근로소득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 2인인 경우 : 50만원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개정이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추가공제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개선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해 설

• 추가 소득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가구원수별 소득공제액 비교

(단위 : 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1인		2인		4인		5인		6인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가구당 (①+②)	200	100	250	200	400	450	500	650	600	850
① 기본	100	100	200	200	400	400	500	500	600	600
② 추가	100	-	50	-	-	50	-	150	-	250
1인당	200	100	125	100	100	113	100	130	100	142

1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소법 §52 ⑨)

현 행	개 정 안
<p>□ 혼인·장례·이사비 공제</p> <p>○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p> <p>○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p>* 기본공제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자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p>○ 공제금액 : 사유당 100만원</p>	<p>연령제한 삭제</p> <p>※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p>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소법 §52, 소령 §110의 3)

현 행	개 정 안
<p>□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p> <p>○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 	<p>○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추가 <p>*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교습과정 요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공제 한도 : 1인당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및 체육시설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 과정 ○ (현행 유지)
---	---

■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도장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취학 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습과정의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소법 §5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수월액의 2.24% 부담 ** 임금총액의 0.45% 부담 ○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보험료공제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 (2006.2.16. 정부제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본인의 노인수발보험료 ○ 노인수발보험법(안)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적용시기

2007.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소령 §11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등	○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2년 일몰설정) -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법 §3)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 개정이유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의 소득과약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06.1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해설

• 의료비공제 대상 추가 예시

- 미용목적의 치아교정(보철, 틀니,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은 현재도 공제대상)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구입비
- 미용·성형 목적의 쌍거풀 수술 등

20.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소법 §52 ⑪)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별공제 제도 ○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이사·장례 ○ 사업자 - 기부금공제 <p>□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정액공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 100만원 ○ 사업자 : 60만원 	<p>□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성실사업자에 대해 표준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 <p>예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 사업용계좌 개설 - 장부기장 - 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을 것 등 <p>※ 성실사업자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p>
--	--

■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소득과약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소법 §56의 2 ①)

현 행	개 정 안
<p>□ 기장세액공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농·어업, 도·소매 : 3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 :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0.75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장세액공제율 - 간편장부·복식부기에 의한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신고시 공제율 인상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15% (100만원 한도)
---	--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 (소법 §6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 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주택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주택매매차익×양도세율(60%)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 추가 ○ 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주택·토지 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주택·토지 매매차익×양도세율(50%, 60%)

■ 개정이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소령 §143 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추계과세 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p>대상 수입금액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7,200만원 미만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4,8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p>* 상기 기준금액 초과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경비는 표준경비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p>	<p>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 2008년 이후 귀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p>※ 2008년 이후 귀속분(2009년 신고)부터 적용</p>
--	---

■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소법 §87 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 과세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법인격 없는 단체중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 ○ 과세방식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사업소득) 	<p><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의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 각자 지분을 보유 - 사업손익을 분배 ○ 적용대상 : 상법상 익명조합* 추가 * 익명조합원은 출자만 하고 영업이익을 분배 받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 ○ 과세방식 변경 - (현행 유지)

- 익명조합원의 경우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	- 출자만 하는 자(익명조합원 등)의 이익 분배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 당연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	---

■ 개정이유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익명조합원의 소득 노출을 유도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상법개편 등과 연계한 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 개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

■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존 익명조합은 2007년 12월까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의무화)

■ 해 설

- 익명조합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비교 사례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조합(영업자 1인, 익명조합원 1인 가정) 소득 4,000만원 발생 ○ 영업자(2,000만원), 출자만 한 익명조합원(2,000만원) 각각 50%씩 분배 ○ 다른 소득 및 공제제도가 없다고 가정
--

<세부담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익명 조합	과세 방법	익명조합 소득 4,000만원 모두 영업자의 단독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되, 익명조합원 분배분(2,000만원)은 지급이자로 공제	익명조합 소득 4,000만원 중 영업자 분배분 2,000만원에 대해서만 영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간주
	세부담	과표 2,000만원(4,000만원 - 2,000만원) × 세율(8, 17%) = 250만원	과표 2,000만원 × 세율(8, 17%) = 250만원 (현행과 같음)

익명 조합원	과세 방법	이익분배된 2,000만원을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분배받는 시점에서 25% 원천징수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합하 여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하 되, 익명조합 분배금액은 최소 25% 과세)	익명조합소득 4,000만원 중 익명 조합원 분배분(2,000만원)은 배 당소득으로 간주하되, 25% 원천 징수후 당연종합과세(최소 14%)
	세부담	2,000만원 × 25% = 500만원(원천 징수)	2,000만원 × 25% = 500만원(원 천징수) * 종합과세시 정산

25.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소법 §87, 소령 §15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장의 등록·신고와 관련 가산세 없음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등록(예: 공동사업을 개인으로 등 록), 지분·손익분배비율 등 허위신고, 변 동내역 허위신고 등 ○ 가산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등록시 수입금액의 0.5%, 허위 신고시 0.1%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소득금액 결정·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감가상각 방법 신고 등 각종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장 관할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일원화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기존 사업장은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화)

26.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소법 §127 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20%) 부담 * 뇌물, 알선·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예외	○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7.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소령 §208 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음식·숙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예시)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input type="checkbox"/> 추계신고방법 ○ 3,6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근거 신설

(소법 §97, 소령 §163 ⑪·§16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결정방법 ○ 세무서장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세 결정 ○ (특례 신설)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결정방법 보완 ○ (현행 유지) ○ 세무서장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실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 세무서장은 양도세 무신고자에게 양도세 결정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토록 기회(기한후 신고) 부여. 다만, 양도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명절차 생략 가능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전환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무신고자의 양도세 결정시 등기부 기재가액 활용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양도하거나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 (소법 §160의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 상호 병기 의무화 ○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li style="padding-left: 20px;">*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 중 53만명(12.2%) ○ 거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 계좌 미개설시 제재방안(2008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사유에 추가 -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 - 감면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배제
--	--

■ 개정이유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고, 과세당국이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제재규정은 2008.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해 설

-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 기준금액

업 종	기준금액	
	간편장부	복식부기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광업 등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이상

30.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구 분	주 요 내 용
도입배경	○ 일반국민 대상의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 위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

	<p>된 현행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 별도 지원</p> <p>○ EITC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p>																																															
적용계층	<p>○ 소득과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p> <p>- 소득과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사업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단계적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EITC의 단계적 확대방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근로자 적용단계</th> <th>사업자 확대단계</th> <th>전면 시행단계</th> </tr> <tr> <th>1단계 (2007~2009년)</th> <th>2단계 (2010년~2012년)</th> <th>3단계 (2013년부터)</th> <th>4단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근로자</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자녀 2인 이상 무주택 (31만 가구)</td> <td>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td> <td>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td> <td>무자녀 가구도 적용 (200만 가구)</td> </tr> <tr> <td rowspan="2">자영 사업자</td> <td>-</td> <td>-</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td> <td>자녀 1인 이상 (40만 가구)</td> <td>무자녀 가구도 적용 (130만 가구)</td> </tr> <tr> <td rowspan="2">특수직 사업자</td> <td>-</td> <td>-</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td> <td>자녀 1인 이상 (20만 가구)</td> <td>무자녀 가구도 적용 (30만 가구)</td> </tr> <tr> <td>농어민</td> <td>-</td> <td>-</td> <td>적용여부 검토</td> <td>적용여부 검토</td> </tr> <tr> <td>적 용 가 구</td> <td>약 31만 가구 (18%)</td> <td>약 90만 가구 (5.3%)</td> <td>약 150만 가구 (8.8%)</td> <td>약 360만 가구 (21.2%)</td> </tr> </tbody> </table>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2007~2009년)	2단계 (2010년~2012년)	3단계 (2013년부터)	4단계	근로자	➔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31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200만 가구)	자영 사업자	-	-	➔		-	-	자녀 1인 이상 (4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130만 가구)	특수직 사업자	-	-	➔		-	-	자녀 1인 이상 (2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30만 가구)	농어민	-	-	적용여부 검토	적용여부 검토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18%)	약 90만 가구 (5.3%)	약 150만 가구 (8.8%)	약 360만 가구 (21.2%)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2007~2009년)	2단계 (2010년~2012년)	3단계 (2013년부터)	4단계																																												
근로자	➔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31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200만 가구)																																												
자영 사업자	-	-	➔																																													
	-	-	자녀 1인 이상 (4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130만 가구)																																												
특수직 사업자	-	-	➔																																													
	-	-	자녀 1인 이상 (2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30만 가구)																																												
농어민	-	-	적용여부 검토	적용여부 검토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18%)	약 90만 가구 (5.3%)	약 150만 가구 (8.8%)	약 360만 가구 (21.2%)																																												
수급자격	<p>○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p> <p>①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인 근로자 가구</p> <p>②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p> <p>③ 일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p>																																															
적용 단위 및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가구 단위 적용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모형 형태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의 미국식 EITC 모형 채택																																														

	<p>근로장려금 산정</p>	<p>부부 합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p>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장려금 산정></p> <table border="1" data-bbox="635 792 1410 990"> <thead> <tr> <th colspan="2">연간 근로소득</th> <th>근로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점증구간</td> <td>0 ~ 800만원</td> <td>근로소득 × 10%</td> </tr> <tr> <td>평탄구간</td> <td>800만원 ~ 1,200만원</td> <td>80만원 정액 지급</td> </tr> <tr> <td>점감구간</td> <td>1,200만원 ~ 1,700만원</td> <td>(1,700만원 - 근로소득) × 6%</td> </tr> </tbody> </table> <p><사 례></p> <p>☞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인 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1,400만원)</p> <p>⇒ EITC 급여 : (1,700만원 - 1,400만원) × 0.16 = 48만원</p>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평탄구간	800만원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점감구간	1,200만원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6%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평탄구간	800만원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점감구간	1,200만원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6%												
	<p>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p>	<p>근로장려금은 납부할 소득세액과 상계한 후의 잔액을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p>												